



'98 전기기기 수출구매 상담회 개최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KOTRA와 공동 주관으로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98. 5. 19~5. 23)과 연계하여 '98. 5. 18(월)~5. 23(토)까지 세계각국 30여개국 15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98 전기기기 수출구매 상담회를 대규모로 개최기로 하였다.
- 그동안 한국의 전기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세계 12위권으로 발전하였으나 내수·관납 위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93년부터 매년 10~16억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 금융위기는 내수불안으로 이어져 우리 전기공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98. 5. 19~5. 23(5일간)까지 개최되는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계기로 우리 전기산업을 단기적으로 내수부진 탈출 및 수출촉진 기반 구축,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개선과 21세기 국가수출 주력산업으로 발전육성하기 위하여 동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 이번 행사는 KOTRA 전세계 무역관의 협조를 얻어 발전기·전동기·변압기·개폐기·변환장치·배전제어장치·전기용접기·전선·조명기기 등 전기기기를 총 망라한 수출과 직결된 전기기기 바이어 150여명 정도 내한하여 '98. 5. 18(KOTRA 대회의실), 5. 19~5. 23(여의도전시장)까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또한 바이어 상담을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전시장내 “KOTRA 상담 지원데스크” 및 “바이어상담실”을 설치하여 참가업체에 한해 개별상담등을 지원하고 전기기기 제조업체 카달로그 전시회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한편 동 행사 이외에도 일본의 동경전력동 전력회사 구매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전시장 바이어 상담실 및 대회의실에서 '98. 5. 20~22(3일간)까지 『일본 전력회사 구매단』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며, 중국국제상회기계행업상회 전기관련 업체와 『한·중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 상담회』를, 인도전기전자공업협회(IEEMA) 구매단과 『한·인도 전기공업 수출상담회』를, 또한 세계각국의 유망바이어를 대거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동행사 및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 전시회가 수출전문 전시회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한국의 전기공업 수출활성화 하

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동 행사 및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관심 및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국제과(담당자: 강용진, 전화: 02-3476-0271)로 연락하면 된다.

중전기기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우리나라 중전기기 산업은 최근 국내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수출 산업화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인하여 수출 경험이 부족하고 수출 업무에 종사할 전문인력 또한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내수 위주의 중전기기 산업을 수출산업화 하고, WTO 체제하의 국제 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출 인력을 양성코자 「중전기기 수출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총 40시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수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중전기기 업체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수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번 연수과정에 개설된 주요 과목으로는 ▲중전기기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전 전략 ▲무역 실무 개요 및 무역 용어해설 ▲국

제무역 계약 실무 ▲신용장 개설 등 수출입 승인절차 및 통관 ▲국제계약서의 기본구조 및 내용 검토 요령 ▲기술·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사업화 전략 등이다.

연수교육을 마친 연수생들은 「그동안 실무에 종사하면서 시행 착오를 많이 겪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본지식이 부족해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단기간내에 습득함으로써 수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감과 능력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연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고, 연수 태도가 우수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어졌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이번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하반기에는 무역 및 인터넷 과정 중심으로 제2기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공업 수출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금년 5. 19~5. 23(5일간) 여의도 종합전시장에서 개최하는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98)」을 계기로 최근 IMF 금융위기 및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전기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전기공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이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 포상코자 다음과 같이 포상 대상자를 접수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포상목적

- 전기공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의욕고취
- 국산화 촉진 및 품질수준 제고
- 전기공업 수출산업화 촉진

○ 포상분야 : 전기기기류 및 부품·소재 분야

○ 포상대상자

- 전기공업 분야의 국산개발에 성공한 업체중 개발에 공이 큰 임직원
- 전기공업 수출산업화에 기여한 공이 큰 임직원
- 기타 전기공업 발전에 공이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

○ 포상훈격 : 산업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표창

○ 시상예정일 : '98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개막식('98. 5. 19)

○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 '98. 3. 31까지(진흥회 별도 신청양식 제출)
- 접수처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국제과(T. 3476-0271)

산업기술자금 지원 요령 공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고 제 1998-1호

공업발전법 제14조 및 '98 산업기술개발용자사업 지원지침(통상산업부 공고 제1998-14호, '98. 2. 17)에 의거 「1998년도 산업기술자금 지원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3. 2.
한국전기공업진흥회장

1998년도 산업기술자금 지원 요령

(시제품 개발분야, 전기부문)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용자대상
 - ① 통상산업부장관이 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 전략품목의 개발사업
 - ②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 기술 등의 실용화 사업
 - ③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개발사업
- ※ 공동개발사업은 참여율 2순위 이하의 업체가 1순위 업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각각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1개 이상 업체는 동일계열 기업군 소속이 아니어야 함.

3. 용자조건 및 한도

◎ 현물담보의 경우

대출금리	용자기간	용자비율	과제당한도액
연 8.0%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	30억원

* 산업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도액 초과지원 가능

* 대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변동에 따라 연동가능

◎ 기술담보의 경우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과제당환도액
연 9.0%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	30억원

- * '98년 산업기술개발융자금 2,827억원중 200억원 이내에서 기술담보사업 시행
- * 기술담보 신청 및 접수문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담보실 (T. (02)8298-723/5)

4. 융자 취급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한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시중은행(제일은행 제외) 및 지방은행(단, 농협, 축협, 수협, 수출입은행, 주택은행은 제외)

- * 기술담보 취급은행도 동일

5. 융자신청

가. 신청기한 : 1998. 3. 2 ~ 3. 18

나. 구비서류

-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본회 소정양식) 1부
-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3) 개발품목 도면(조립도면) 또는 외국 카탈로그 1부
- 4) 재무제표 증명원(당기/전기분) 1부
- 5) 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 7) 개발의뢰서, 기술도입계약서, 기술지도계약서, 위탁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부
- 8) 구입시설품목 견적서 1부

- * 구비서류중 6, 7, 8호는 해당업체에 한함.

다. 신청시 유의사항

- 1) 우편 접수시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2) 지원우대조치 해당품목 신청시 가점부여.
- 3)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음.

6. 지원우대조치

- 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3%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 나.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약이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동종업계의 공동개발조직이 구성된 품목
- 라. 자본재기술개발관리단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품목
- 마. 생산자 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공용화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 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후속적으로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

7. 신청자 의무사항

용하지 못한다.

가.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확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임하는 자의 기한연장 조치가 없는 한 확정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기술담보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구분계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마.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취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 납부

- 융자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취급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8.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137-0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51-5 대경빌딩 9층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진흥부 진흥과
Tel : (02)3476-0271/4
Fax : (02)3476-0275

다. 목적외 사용금지

-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때에 지정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